㈜ 비스토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 조와 당사 정관 제 22 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2 년 08월 25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2. 총회장소 : 본점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A동 7층 703호

3. 회의 목적사항

제 1 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사내이사 재신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제 1 호 의안 관련)

제 1 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 1 호 의안이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의안설명서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6. 지참서류
- 1) 주주가 직접참석하는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공증용,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것) 신분증.

2)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주주총회 대리인위임장(주주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공증용위임장(주주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주주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
대리인 신분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입장 전 '디지털 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 를 착용해야 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비스토스 대표이사 이 후 정 (직인생략)

별첨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코스닥 시장 상장

2. 합병의 방법

- 본 합병에서 (주)비스토스는 실질적인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존속 법인이며, 에스케이제5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 이후 소멸되는 소멸법인입니다. 따라서 합병 형태상 이는 흡수합병으로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에 해당됩니다.

3. 합병의 요령

- ①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대상회사인 에스케이제5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에스케이제5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1주당 합병법인인 (주)비스토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0752688주를 교부합니다.
- ② 교부금의 지급 :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합병비율:1:1.0752689
- ④ 채권자 보호 절차 :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2년 08월 26일부터 2022년 09월 27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합병 세부일정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22.04.06	2022.04.06	
합병계약일		2022.04.06	2022.04.06	
합병계약변경체결일(l 차)	2022.06.29	2022.06.29	
주주명부폐쇄 공고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2.06.29	
합병계약변경체결일(2 차)		2022.07.08	2022.07.08	
권리주주확정 기준	일	2022.07.14	2022.07.14	
고 고 다 H -ll 베 -ll -ll	시작일	2022.07.15	2022.07.15	
주주명부폐쇄기간	종료일	2022.07.22	2022.07.22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22.08.10	2022.08.10	
합병반대주주	시작일	2022.08.10	2022.08.10	
사전통지기간	종료일	2022.08.24	2022.08.24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08.25	2022.08.25	
7 1 1 2 2 2 2 1 1 1 2	시작일	2022.08.25	2022.08.25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종료일	2022.09.14	2022.09.14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08.26	2022.08.26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2022.09.27	2022.09.27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22.09.26	2022.09.26	
메메리 카케 카 카 카 카 카 카	시작일	_	2022.09.26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종료일	_	2022.10.17	
합병기일		2022.09.28	2022.09.28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09.28	_	
합병신주상장(예정)일		2022.10.18	_	

주 1)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 2)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2022년 08월 25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주식의 종류와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제 374조의 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비스토스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2년 09월 2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제 3 항에 의거 (주)비스토스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비스토스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1,860 원 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 의 피합병법인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제 374 조의 2 제 3 항에 의거 (주)비스토스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 374 조의 2 제 4 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비스토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5 1 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과 1.5 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5 3 항에 의거 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과 1.5 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_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고
A. 본질가치	1,860	[(aX1+bX1.5)÷2.5]
a. 자산가치	438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2,808	1주당 수익가치
B. 상대가치(주 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1,860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주 명부 기준일(2022 년 07 월 14 일) 현재 합병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전 영업일(2022 년 08 월 24 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 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 영업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 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 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 522 조의 3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5 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2 년 08 월 25 일 예정)부터 20 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비스토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주)비스토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 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비스토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 청구 접수처]

(주)비스토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우림라이온스밸리 5 차 A 동 702호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 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에스케제5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비스 토스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기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의 ㈜비스토스 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3.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3 조의 2 (위원회)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u>를 둘 수 있다.</u>
1. 준법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수위원회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u>한다.</u>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와 제3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 4.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후보자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 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와 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비고
최동일	前)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前)대우증권 주식인수부 (IPO) 前)KB증권 ECM팀 (IPO) 前)㈜햇츠온 경영관리부 前)KB증권 ECM본부 ECM2 부장 (IPO) 現)㈜데이드림엔터테인먼트 CFO 現)지우세무회계	이사회	관계없음	없음	-

2. 사내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후보자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 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와 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비고
이후정	現)㈜비스토스사내이사				
김태호	現㈜비스토스시내아시				